

新 電 氣 事 業 法

制定作業의 顛末(Ⅱ)

昔 成 煥

韓 電 · 江 陵 支 店 企 劃 室 長
(前) 法 令 整 備 委 員 會 委 員 長

V. 附屬法令制定作業

前회에서 言及한대로, 千辛萬苦 끝에 立法機關을 通過한 母法(電氣事業法)은 73年 2月 8日에 大國領의 裁可를 받아 公布되었으나 即時 施行된 것은 아니다. 尙 大한 分量의 附屬法令들이 制定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人들은 母法의 制定으로서 作業이 一段落된 것으로 알았으나 事實은 作業量으로 본다면 그 다음의 일들이 컸다.

1. 附屬法令들

(1) 附屬法令이 必要한 理由

우리나라 大部分의 行政法令들이 法律과 施行令만으로 構成되어 있다. 舊電氣事業法도 母法과 施行令뿐이다. 그래서 구차한 數置까지 모두 施行令에 規定되어 있어 날로 發展되는 新技術에 步調를 맞추기가 極히 어려웠다. 이야기가 다르지만 「農漁村電化促進法」의 경우는 施行令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運用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新法은 보다 運用에 便利하고 法規範을 合理的으로 區分하기 위해서 全體 規制內容을 法律—大統領令—一部令으로 三分하고, Kelsen의 이른바 法段階說에 맞추어 i) 法律에는 基本方針과 權利義務에 關한 事項을, ii) 施行令等 大統領令에는 法律事項中 補完的인 內容을 規定하고, iii) 施行規則等 商工部令에는 節次, 書式,

數值等 技業的이고 技術的인 內容을 規定하므로써, 恒常 發展하는 「電氣事業界」의 規制에 卽應할 수가 있도록 하였다.

(2) 附屬法令들

여기서 잠간 電氣事業法에 依하여 制定된 附屬法令들의 面貌를 살펴 볼 必要가 있다.

- ① 電氣事業法施行令(大統領令 第6900號 73. 10. 11. 公布)
- ② 電事業法の 施行日에 關한 規程(大統領令 第6901號 73.10.11 公布)
- ③ 電氣事業法施行規則(商工部令 第409號 74.1.9 公布)
- ④ 電氣事業會計規則(商工部令 第410號 74.1.9 公布)
- ⑤ 電氣關係報告規則(商工部令 第424號 74.4.6 公布)
- ⑥ 電氣事業法에 依한 主任技術者의 格等에 關한 規則(商工部令 第425號 74.4.6 公布)
- ⑦ 電氣設備技術基準令(商工部令 第411號 74.1.9 公布)
- ⑧ 發電用火力設備技術基準令(商工部令 第412號 74.1.9 公布)
- ⑨ 發電用水力設備技術基準令(商工部令 第413號 74.1.9 公布)
- ⑩ 電氣工作物熔接技術基準令(商工部令 第414號 74.1.9 公布)
- ⑪ 電氣設備技術基準令의 細部事項을 定하는 告示(告示第號公布 第10505號 74.2.14 公布)

⑫ 發電用火設備技術基準令의 細部事項을 定하는 告示(商工部告示 第10506號 74.2.14 公布)

⑬ 發電用水力設備技術基準令의 細部事項을 定하는 告示(商工部告示 第10507號 74.2.14 公布)

⑭ 電氣工作物熔接技術基準令의 細部事項을 定하는 告示(商工部告示 第10508號 74.2.14 公布)

⑮ 電氣工作物技術基準令告示 附表(商工部告示 第10509號 74.2.14 公布)

2. 再作業의 必要性

附屬法令 草案에 關하여는, 前回에서 言及한 바와같이, 第1次作業時(1970年)에 一旦 모두 完成되어 있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理由로 因하여 全面的으로 再作業할 수 밖에 없었다.

첫째, 母法인 電氣事業法이 制定過程에서 尙하거 많이 添附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附屬法令들의 草案들도 添削될 수 밖에 없었는데, 例를 들면 電氣事業의 許可基準에 關한 規定이 當初의 草案에서는 母法에 있었는데 「複雜하다」는 理由로 여기서 削除되므로서不得已 施行令(第8條)에 넣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 第1次作業時에 豫想할 수 없었던 制度的인 要請 때문에 母法에서 削除된 部分인데, 例를 들면 電氣技師(옛날의 電氣主任技術者)의 允許取得에 關한 事項은 第2次作業時에는 이미 科學技術處에서 「科學技術資格法」을 構想하고 있었으므로, 이法이 施行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混亂을 最少限으로 防止하기 위하여, 母法에서는 基本原則만 남겨두고(法 第40條以下) 具體的인 內容은 施行令(第16條以下)으로 委任하였던 것이다. 한편, 그以後에 이루어진 이야기지만, 1973年 12月 31일에 國家技術資格法이 制定·公布되고 1974年 7月 1일부터는 그 施行令까지 準備되어 施行하기에 이르렀으므로, 電氣事業法(施行令)에서 이 特別法과 相衝되는 電氣技師의 名稱과 資格取得에 關한 要件等에 關하여 손질이 不可避하였는 바, 施行令 第16條 以下만을 改正하므로써 손쉽게 마무리 지었다(大統領令 第7860號, 1975.7.2 公布).

셋째, 電氣設備技術基準令은, 第1次作業時에 많이 參考할 外國의 法令들이 5年이라는 歲月과 함께 많은 變動이 있어, 벌써 낡은 것이 되어버렸고, 이미 다른 規定과 基準들은 使用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보셔도 크게 손대지 않을 수가 없었다.

3. 第3次 作業

이렇게 되고 보니, 第1次 作業時에 作成된 附屬法令 草案들은 거의 모두 白紙化 되었고 全面的인 再作業이 要請되었다. 그런데 附屬法令들은 그 分量도 尙大할뿐만 아니라 各己 專門分野가 다른 事項들이기 때문에 한두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遂行할 수가 없었다. 여기서 着眼된 것이, 第1次 作業時에서의 같이 一定期間 韓電에 어떤 組織을 構成하여 作業을 遂行하는 方案인 것이다.

(1) 法令整備委員會

商工부와 韓電의 高位層間에 다시 合議가 이루어져서, 韓電이 다시 暫定機構를 두어 作業을 도와 주기로 하고, 1973年 3月 8日 「法令整備委員會 規程」이 制定되고 3月 13日에 人事發令으로서 다음과 같이 委員會가 構成되었다.

委員長: 金鼎德(企劃擔當理事)

副委員長: 成樂正(企劃管理部長)

委員: (各部 次長)

幹事: 昔成煥(法令整備擔當役)

第1分科委員會長: 李敦馨(經濟部次長)

第2分科(I)委員長: 李龍熙(誘導障礙技術役)

第2分科(II)委員長: 金善昶(發電部次長)

第3分科委員會長: 申君濕(企劃管理部次長)

各分科委員會委員: (各己 10名 內외의 幹事)

各分科委員會幹事: 李海宣, 金弘泳, 李錫環

(2) 委員會의 機能

委員會의 機能은 各附屬法令 草案을 審議하는 것인데 每週 火曜日과 木曜일에 會集하여 바쁘게 일했다. 特別히 施行令草案과 施行規則 草案은 本委員會가 直接 맡아 處理했고, 그밖의 附屬法令들은 第1分科에서 會計規則, 第2分科(I)에서 電氣設備技術基準令, 第2分科(II)에서 發電用火力設備技術基準令, 第3分科에서 其他의 部令들을 맡아서 作業했다.

그러나 構成員의 大部分은 모두 非常任이고 常任은 오직 筆者를 비롯한 세 사람의 幹事들만이었기 때문에 事實上 이들 幹事들의 作業이 큰 比重을 차지했다. 뒤에 다시 言及할 機會가 있겠지만, 法令整備役으로서 責任을 맡은 筆者를 除外하고, 이들 세 사람의 分科委

幹事들은 서로 協助하면서 참으로 熱心히 作業을 했다. 모두가 年歲가 많으시고 幹部(係長)로서 많은 業務經驗들이 있는데 고된 이 職責을 맡고서도 아무런 不滿없이 잘 견디어 일을 하였다. 業務內容들이 單純히 内部에서의 草案研究로서 끝나지 않고 商工部, 法制處 그리고 中央廳의 關聯되는 各部處를 出入하며 進行시켜야 했기 때문에 더욱 監路가 많았다.

4. 附屬法令 制定經緯

委員會의 構成員들이 熱心히 努力한 結果 約 1個月이 지나서 施行令 草案의 輪廓이 들어나고, 4月 21日 韓電 任員會에 簡單한 報告를 한 후 商工部로 提出했다.

(1) 施行令 制定

商工部는 施行令 草案에 대한 意見을 듣기 위하여 4月 26日 韓電, 京仁에너지, 水資源開發會社, 電技主任技術者協會, 電氣協會, 工業振興廳, 科學技術處, 東國製鋼等 電氣事業者, 電氣關係團體, 附聯官廳, 電氣需用家代表를 모이게 하고 意見을 綜合하였다.

오랜 檢討 끝에 7月 25日 商工部長官의 決裁를 받고 8月 1日 經濟次官會議, 8月 2日 經濟長官會議를 各各 通過하고 法制處에 回附되어 8月 7일부터 1週日間 審議하였다. 法制處의 擔當法制官은 崔丙益씨였다. 母法制定時의 擔當法制官은 南載祐氏였는데 그 後에 社內的으로 擔當部處 調整이 있었다 한다. 法制官의 變動으로 因하여 처음에는 약간의 어려움도 겪었다. 母法과 連結이 쉽 되지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崔法制官 亦是 熱心히 審議해 주었다. 그후에 모든 法令들의 審議를 끝내고 우리 팀들이 모여 앉으면 잊지 않고 回想하곤 하지만, 實로 感歎할 만큼 精力的으로 치밀하게 다루어 나갔으며 그러한 崔法制官의 姿勢야말로 우리나라 公務員의 龜鑑이라고들 느꼈다. 그後에 施行令案은 「電力審議委員會」의 構成問題로 因하여 總務處, 工業振興廳, 經濟企劃院, 科學技術處 등과 協議를 繼續했고 8月末日에는 一般落을 보아 9月 10日에는 次官會議를 通過하였다. 그러나 이때 電力審議委員會가 다시 論難의 對象으로 되어, 거기에 두기로 했던 「專門委員」制度가 削除되어 버렸다. 그후 國務會議에 上程도록 議案을 回附 하였으나 法制處와 法務部間에 些少한 意思不一致點이 있어 2回나 上程保留 되었다가 2週日만

인 9月 25日에야 國務會議를 通過하였다.

이 法令案은 10月 11日에 大統領의 裁可를 받아 公布 되었는데(大統領 第6900號) 附則에 施行日은 11月 1日로 規定되어 있어 不過 며칠 남지 않았다. 이 施行令의 國務會議 通過 및 公布가 遲延되어서 그후에 商工部令의 制定日程에 差跌을 招來하였고 實質적으로 新法 全體의 施行이 約 2個月程度 늦춰지는 結果로 되었다.

(2) 施行規則

施行規則 草案의 作成 過程도 施行令과 大同小異했다. 施行令이 公布된 10月 11日에 商工部에 提出되어 實務者들의 審査를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意見의 一致를 보지 못한 것은 電氣事業用 電氣工作物의 工事에 있어서 商工部長官이 事前認可 할 것과 申告받을 事項의 區分限界를 電線路의 경우 어느 程度의 規模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事前認可事項에 對하여는 事後에 使用前檢査(흔히 말하는 竣工檢査)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區分限界를 놓고 오랜 時日 論難이 되었다. 그러나 結局 商工部意見(2萬볼트級)대로 落着 되었으나, 韓電案(5萬볼트級)은 어느 程度 歲月이 經過된 後에 採擇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는 條件을 달아 두었다.

10月 末日에 商工部長官의 決裁를 받고 法制處에 回附되어 11月 7일부터 10日間 法制官의 審議를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豫想하지 못한 難關이 기다렸다. 그것은 많은 分量의 款式이 있는데 이것은 總務處의 아주 複雜한 節次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다. 여기서 約 1個月의 時日이 消耗되었다. 이미 母法과 施行令이 施行中에 있어서 하루가 如三秋 같이 다급했지만 모든 節次를 거쳐서 하는 수 없이 이듬해 74年 1月 9日에야 公布 施行되었다.

(3) 會計規則

第1分科委員會가 作成한 草案은 5月 初旬頃에 商工部로 提出되어 5月 10日에 商工부와 모든 電氣事業者(韓電, 京仁에너지, 水資源開發會社)代表들의 意見交換이 있었다. 그後 9月 1日에 商工部 實務者들의 審査가 있었고 9月 28日에 法制處에 送付하였다.

法制處에서는 施行令이 公布되기를 기다려 10月 17일부터 3日間 審議를 하였다. 그 후에 많은 分量의 資產單位物品表를 整理하는 데에 상당한 時日이 經過되고 다른 部令들과 함께 이듬해 74年 1月 9日에 公布 -

施行되었다.

(4) 電氣事業法에 의한 主任技術者の 資格에 關한 規則

商工部에서 電氣技師(舊電氣主任技術者) 등의 免許에 關한 業務는 新設된 工業振興廳에 委任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에 關한 法規案의 制定을 工業振興廳이 擔當하여야 마땅할 것이지만, 當初부터 電氣事業法의 制定關係業務를 商工部(動力局 電力課)가 遂行한 關係로 繼續해서 電力課가 主管하되 工業振興廳의 意見を 參酌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 當時의 社會的 興件은 잇달아 國家試驗에서의 不正行爲가 摘發되어 試驗管理業務에 恐怖를 느끼고 있을 때인지라, 國家考試인 學術試驗을 大幅으로 地方長官에게 委任하겠다는 것이 工振廳의 意見이었다.

그러나 國家免許試驗을 地方에 委任하여 施行하는 경우의 不合理한 點과 많았음은 先例를 理由로 商工部는 大體로 韓電의 草案을 土臺로 11月 30日 部令案을 確定짓고 法制處로 審議要請하였다. 法制處에서는 이 렇다할 큰 論難없이 審議하였으나 科學技術資格法과의 關係도 고려하여 미루어 오다가 이듬해 3월에 作業을 完了하고, 商工部に 回送되어 4月 6日에 公布·施行되었다.

(5) 報告規則

大體로 主任技術者 資格規則과 步調를 맞추었으며 74年 4月 6日에 公布·施行되었다.

(6) 4個 技術基準令

第2分科委員會는 I班 電氣設備팀과 II班 發電設備 팀으로 나뉘어서 作業을 進行시켜 8월에 草案을 完成했다. 9月中에 商工部에서 所定의 節次를 거쳐 9月 29日에 모두 法制處로 審議依頼하였다.

法制處는 10月 19日에 發電用水力設備技術基準令, 10月 22日서 發電用火力設備技術基準令, 10月 23日에 電氣工作物熔接技術基準令 등의 審議를 끝내고 11月 6日 電氣設備技術基準令 마저 審議가 끝났다. 法制處에서의 技術基準令에 對한 審議는 用語·文句問題를 除外하고는 별로 어려운 點은 없었으나 分量이 많아서 審議官이나 우리쪽 金弘泳部長이 모두 빔을 흘렸다. 이듬해 1月 9日에 告示와 함께 公布·施行되었다.

(7) 5個 告示

告示는 法制處를 經由하지 않을 뿐이지 다른 節次는 모두 部令과 同一하다. 4個 技術基準令과 함께 商工部에서 74年 1月 9日 公布되었다.

(8) 受電制限規則의 未定問題

當初의 草案에는 受電制限規則과 使用制限規則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들은 모두 갑자기 電力需要가 增加하여서 電力需給에 差跌이 發生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大容量 需用家를 事前에 規制하는 것인데, 時間이 經過되던 電源開發에 依하여 解決될 수가 있는 性質의 것이었다. 그러나 部令들을 만들 즈음에는 이른바 10月 中東戰爭이 勃發하여 世界的인 에너지危機가 한 차에 휩쓸고 보니 에너지가 絶對으로 缺乏되는 경우를 對備할 必要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相對적으로 電力이 모자라는 경우에 對備하는 當初의 草案은 一旦 保留하고, 適切한 時期에 새로운 內容으로 이를 作成하도록 뒤로 미루었다.

5. 附屬法令들의 內容

여기서 잠간 附屬法令들의 內容을 簡略히 살펴볼 必要가 있다.

(1) 電氣事業法施行令

全文 39條 附則, 內容은 母法에 規定된 許·認可의 基準, 重要한 行政節次, 主任技術者の 免許에 關한 事項, 電力審議員會 等에 關한 規定들이다.

(2) 電氣事業法の 施行日에 關한 規程

全文 1條 附則이다. 普通의 경우 法律案은 公布나 또는 一定한 期日을 定하여 效力을 發生하는 것이 常例인데 電氣事業法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附屬法令들의 分量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그 制定 作業進도를 가능할 수가 없어서 本法 附則 ①項에 “이 법의 施行日은 따로 大統領으로 定한다”고 規定하여 附屬法令 制定作業의 進度에 따라 本法의 施行時期를 調節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後 施行令案이 確定段階에 있을 때 이 施行日規程案도 함께 國務會議에 上程하면서 11月 1日을 母法의 施行日로 定하였었다. <다음 號에 계속>